

의안번호	제 5 호
의 결 년 월 일	1998년 7월 10 일 (제 74 회)

심의의결사항
원안가결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년 . 월 . 일	1998. 7. 9.

기획감사실장 심사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
----------	---

제출년월일 : 1998년 7월 9일

제출자 : 보은군수

1. 제안이유

-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여비 규정('98. 2.24 대통령령 제15680호)으로 통합하여 제정 공포 함에 따라 보은군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내여행은 국내여비규정, 국외여행은 국외여비규정을 적용 하던 것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적용
-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적용(2·3급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과 동일)

3. 근거법령 : 공무원여비규정('98. 2.24 대통령령 제15680호)

4. 기 타 : 해당없음

붙임 1.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 참고자료

보은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로 “동규정” [별표1] ” 은 “동규칙 [별표1] ”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 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 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생략)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행과 같음)
<신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8조제3항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여비지급 ----- ----- 공무원여비규정 ----- 공무원여비규정 ----- -----.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 -----. 2. 제17조제1항단서중 ----- ----- -----

현행	개정(안)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정 제17조”로 본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3. 제18조제1항 ----- ----- ----- “동규정 [별표1]” 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현행	개정(안)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삭 제>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에게 국내여비 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에 준용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는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삭 제>
제6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만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 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삭 제>

제 4 편 내 무

보은군여비조례

제정 (1964. 3. 12 조례 제 56호)
 개정 (1965. 4. 9 조례 제 83호)
 개정 (1968. 7. 3 조례 제 136호)
 개정 (1971. 9. 21 조례 제 203호)
 개정 (1971. 11. 25 조례 제 237호)
 개정 (1972. 10. 6 조례 제 270호)
 개정 (1973. 1. 29 조례 제 275호)
 개정 (1973. 11. 22 조례 제 277호)
 개정 (1975. 1. 1 조례 제 333호)
 개정 (1975. 1. 17 조례 제 337호)
 개정 (1975. 5. 15 조례 제 353호)
 개정 (1976. 9. 10 조례 제 410호)
 개정 (1977. 11. 9 조례 제 484호)
 개정 (1978. 7. 24 조례 제 510호)
 개정 (1979. 3. 30 조례 제 538호)
 개정 (1980. 2. 4 조례 제 586호)
 개정 (1981. 1. 21 조례 제 632호)
 개정 (1981. 5. 27 조례 제 655호)
 개정 (1982. 2. 10 조례 제 704호)
 개정 (1982. 12. 31 조례 제 779호)
 개정 (1988. 12. 30 조례 제 834호)
 개정 (1988. 4. 28 조례 제1057호)
 개정 (1989. 3. 10 조례 제1155호)
 개정 (1989. 4. 25 조례 제1193호)
 개정 (1996. 2. 14 조례 제1449호)

제 1 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국외여행을 할 때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에
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3 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3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제1호의 해당공무원란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제 4 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1조 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제 5 조【이 전 비】 인사 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에 준용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제 4 편 내 무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 6 조【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1964. 3. 12 조례 제 5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 4. 9 조례 제 83 호)

이 조례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 7. 3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9. 21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1. 25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10. 6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1. 29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11. 22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 1. 1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 17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5. 15 조례 제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4 편 내 무

부 칙(1989. 3. 10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5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14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 정 복 도

☎360-765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220~2286/Fax220-2219/담당 : 이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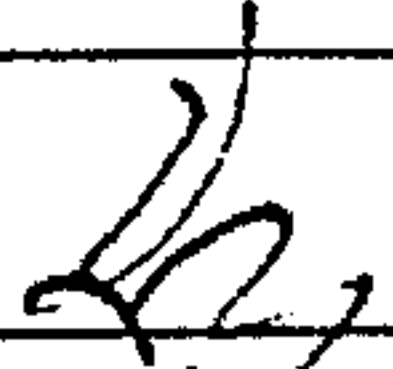
문서번호 총무 12600 - 681

시행일자 1998. 5. 13.

【경 유】

수 신 더

참 조 총무(내무)과장

선결	부국	106	지시	
접	일자 시간	98.5.14	결	과장 
수	번호	1488	재·공	계장 
처 리 과	내무과		공	
담 당 자	최재현		람	

제 목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운영 12500 - 135('98. 5. 6)호의 이첩입니다.
2.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재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을 붙임과같이 통보하오니 개정·공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내용의 공포예정보고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1 부 끝.

중 정 복 도 자



내무국장 전결

第5編 國家公務員 第3章 報酬・實費辨償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개정 98·2·28〉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 분		해 당 공 무 원
특 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전기획부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특 1급외교직공무원,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감,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 1 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특 2급외교직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별표 2〕제 1 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호봉인 검사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의 대학원장·단과대학장·처장 기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특 3호봉 봉급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 초·중·등교육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 2 호		1. 2급 및 3급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별표 2〕제 1 호 나목 및 제 2 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제 1 호 가목 및 제 2 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2호봉이하의 검사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의 교수·부교수,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 교육부분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별표 3에 의한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교육행정연수원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 부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第5編 國家公務員 第3章 報酬・實費辨償 공무원여비규정

제 3 호	1. 4급 및 5급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봉 이상의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별표 3에 의한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 4 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 1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제 2 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제 3 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000
제 4 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0,000	15,000

- 비 고 :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